

● 제321회 ●
서울특별시의회(정례회)
제9차 보건복지위원회

「영유아보육법」 개정에 따른 서울특별시 조례
“영유아” 용어 정의 규정에 관한 일괄정비 조례안
검 토 보 고 서

2023. 12. 19.

보 건 복 지 위 원 회
수 석 전 문 위 원

【 강석주 의원 발의 】

의안번호 1391

I. 조례안 개요

1. 제안자 및 제안경과

- 가. 제안자 : 강석주 의원(찬성 10명)
- 나. 제안일 : 2023. 10. 16.
- 다. 회부일 : 2023. 10. 23.

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가. 제안이유

- 지난 8월 8일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이 명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영유아의 정의를 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’에서 ‘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변경하였음.
- 이에 서울특별시 조례에서 종전의 “영유아”용어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일괄하여 정비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 자치법규의 접근성을 개선하여 이를 통해 시민의 권익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에서 “영유아”용어를 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정의 하던 것을 ‘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규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참조)

다. 입법예고 (2023.10.26.~10.30.) 결과 : 의견없음

II. 검토의견 (수석전문위원 주병준)

1 조례안의 개요

- 동 조례안은 지난 8월 8일 개정된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영유아의 정의를 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’에서 ‘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변경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조례에서의 ‘영유아’ 정의 규정을 일괄 정비하고자 발의됨.

2 주요사항 검토

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¹⁾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의2제2항²⁾에서 양육수당 지원의 대상을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로 정하고 있어, 실제 어린이집 보육 및 가정양육 지원 등 각종 보육서비스는 초등학교 취학 전 7세까지의 아동에게 제공하고 있음.
- 따라서 실제 정책 및 보육서비스의 적용 대상 나이와 법률에서 정의하고 있는 영유아 나이를 일치시켜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해 상위법령인 「영유아보육법」에서 영유아의 정의를 ‘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’에서 ‘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’으로 변경하였음.

1)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4조의2(양육수당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집이나 「유아교육법」 제2조에 따른 유치원을 이용하지 아니하는 영유아에 대하여 영유아의 연령을 고려하여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.

2) 「영유아보육법 시행령」 제23조의2(양육수당 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)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양육수당을 지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결정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영유아가 6세가 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2월까지 매월 정기적으로 양육수당을 지원한다.

- 이에 동 일괄정비 조례안은 「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」 등 5개 조례에 영유아 규정을 상위법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괄개정하기 위함으로써 개정에 따른 별도의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<일괄개정 대상 조례 목록>

연번	대상 조례
1	「서울특별시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지원 조례」 제2조제1호
2	「서울특별시 보육 조례」 제1조의2제1호
3	「서울특별시 양육재난지원금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
4	「서울특별시 영유아 발달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
5	「서울특별시 온마을아이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2조제1호다목

3 종합 의견

- 동 개정안은 서울특별시 조례 상의 영유아의 정의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실제 정책지원 대상과 일치시키려는 것으로 법적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.